

#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21. 6. 3.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회부일자 : 2021. 6. 3.
- 상정일자 :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6. 14.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박 해 룡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조항 등 정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 약칭사용 삭제(안 제1조)
- 조문 정비(안 별표 1 ~ 별표 2)
  - 소관부서, 위임사무명, 근거법령 정비
-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(안 별표 3)
 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
   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
   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 찬 규)**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,  
안 제1조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 총칙규정에 의거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을 삭제하고 목적규정 다음 조항인 안 제2조 위임사항에 약칭을 추가하고,
  
- 직제신설에 따른 소관부서의 변경, 위임사무의 추가 및 변경, 근거법령 정비 등에 따른 조례안 [안 별표 1], [안 별표 2]의 내용을 정비하고,
  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른 주택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[안 별표 3]에 추가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